

발기인총회의사록

2018년 8월 13일 시간은 15시 00분 주식회사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 수	1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30,000 주
출석발기인수	1명	이의 인수주식수	30,000 주

발기인 대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표는 발기인 전원이 상법 제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사내 이사 김부열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감사 권 혁 준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 사항을 발기인 아닌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다. 잠시 후 발기인이 아닌 이사 및 감사는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5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바 전원일치로써 다음과 같이 본점 설치장소를 결정하다.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승인의 건

의장은 이사의 보수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이사의 보수는 무보소로 하기로 승인하다.

제7호 의안 감사 보수승인의 건

의장은 감사의 보수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감사의 보수는 아래와 같다.

- 1인당 월 삼십만원으로 한다. 단 회사 각 주주들의 증자일 익월의 매월 초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회사 각 주주들의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함

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15 시 30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

2018년 8월 13일

주식회사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발기인대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이사 박 성 표 (안)

